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70,001,823	20,100,055
일반회계	520,543,827	15,616,315
특별회계	149,457,996	4,483,740
공기업특별회계	23,304,734	699,14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645,677	49,37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1,659,057	649,772
기타특별회계	126,153,262	3,784,59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196,520	635,896
주택사업특별회계	2,867,624	86,029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3,302,662	99,08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40,000	31,200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36,000	1,08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7,882,520	236,476
교통사업특별회계	4,986,567	149,597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84,841,369	2,545,24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성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974,37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5,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